

## 부천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. 11. 2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1. 11. 2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9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(2001. 11. 10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세정과장 박명호)

가. 제안이유

○ 인터넷 사업의 급속 확산에 따라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홍보매체를 이용한 유료광고 유치 근거를 규정하여 지방재정 수입을 증대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- 유료광고 적용대상에 부천시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홍보매체를 신설함(안 제2조)
- 위원회의 구성에서 각국 주무과장을 공보·정보·청소 및 광고계재 관련부서의 장으로 변경함(안 제7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천시 홈페이지에 배너광고 있습니까?</li> <li>○ 영상홍보 계획은?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없습니다.</li> <li>○ Bis시스템과 실내체육관, 종합운동장 전광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.</li> </ul>

4. 토론요지

- 없 음

5. 수정안의 요지

- 원안가결

6. 심사결과

-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523호
의결년월일	2001. 11. 13 (제91회)

제출년월일 : 2001. 11. 2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- 인터넷 사업의 급속 확산에 따라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홍보매체를 이용한 유료광고 유치 근거를 규정하여 지방재정 수입을 증대하기 위함

주요골자

- 유료광고 적용대상에 부천시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홍보매체를 신설함(안 제2조)
- 위원회의 구성에서 각 국 주무과장을 공보·정보·청소 및 광고계재 관련부서의 장으로 변경함(안 제7조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부천시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홍보매체

제7조제2항 중 “소관부서의 장 및 각 국의 주무과장을 위원으로 하며”를 “위원은 소관부서의 장·공보·정보·청소 및 광고게재 관련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적용대상) (생략)</p> <p>1~3. (생략)</p> <p>(신설)</p> <p>4. (생략)</p> <p>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(생략)</p> <p>②위원장은 세외수입총괄 담당국장이 되고, 소관부서의 장 및 각 국의 주무과장을 위원으로 하며, 간사는 세외수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</p> <p>③ 및 ④(생략)</p>	<p>제2조(적용대상) (현행과 같음)</p> <p>1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부천시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홍보매체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.....위원은 소관부서의 장·공보·정보·청소 및 광고게재 관련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.....</p> <p>③ 및 ④(현행과 같음)</p>